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화장품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**재세[2016]103호각 성, 자치구, 직할시, 계획단열시재정청(국), 국가세무국,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:합리적 소비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, 화장품소비세 정책조정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.1. 일반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폐지하고, “화장품”세목명칭을 “고급화장품”으로 변경한다. 징수범위에는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, 고급 스킨케어화장품과 화장품세트가 포함된다. 세율을 15%로 조정한다.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화장품은 생산(수입)단계 판매(납세)가격 (증치세 불포함)이 10 위안/ml(g) 또는 15 위안/편 (장) 및 이상의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스킨케어화장품을 뜻한다. 2.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. 재정부국가세무총국2016년9월30일 |  | **关于调整化妆品消费税政策的通知**财税〔2016〕103号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：　　为了引导合理消费，经国务院批准，现将化妆品消费税政策调整有关事项通知如下： 　　一、取消对普通美容、修饰类化妆品征收消费税，将“化妆品”税目名称更名为“高档化妆品”。征收范围包括高档美容、修饰类化妆品、高档护肤类化妆品和成套化妆品。税率调整为15%。 　　高档美容、修饰类化妆品和高档护肤类化妆品是指生产（进口）环节销售（完税）价格（不含增值税）在10元/毫升（克）或15元/片（张）及以上的美容、修饰类化妆品和护肤类化妆品。 　　二、本通知自2016年10月1日起执行。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　　2016年9月30日   |